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직류체계를 개편하고 인사 운영 및 관리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류체계 개편(별표1)

1) 데이터 직류 신설 및 유사 직류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직류체계 개편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방법 개선(안 제50의3, 제62조)

1) 경력경쟁임용시험 추가합격 가능사유를 확대하여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토록 개선

2) 자연재난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승진임용 관련 제도 개선(안 제34조, 제30조)

1)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전부 적용되도록 법령 보완

2) 승진심사 시 심사방법에 대한 조문 정비

라. 필수보직기간 등 보직관리 유연화(안 제7조, 안 제27조, 안 제27조의7, 안 제38조의2)

1) 국내외 장기훈련 시 보직 미부여 허용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하고 훈련기준을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기간으로 단축(1년→6개월)

2) 필수보직기간 준수사항과 전출제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는

등 내용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라목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1년 이상”을 “제19조에 따른 6개월 이상”으로,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제7호·제10호·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2. 공무원이 승진, 강임 등으로 임용됨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정계,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가족과의 거주,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는”으로, “있으며,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를 “필수보직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따라 전출 또는”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전보”로 한다.

제27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제30조의 제목 “(5급·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근신·영창”을 “근신·군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를 받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4항제3호”를 “제27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0조의3제7항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하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 군	직 령	직 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반행정	지 방 관리관	지 방 이사관	지 방 부이사관	지 방 서기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문화홍보									
		감 사									
		통 계									
	기업행정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전 산	지방전산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데이터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 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 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2. 기술	공 업	일반기계	지 방 관리관	지 방 이사관	지 방 부이사관	지 방 서기관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전 자									
		원자력									
		금 속									
		섬 유									
		일반화공									
		가 스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지방농업 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식물검역									
축 산											
생명유전											
산림자원											
산림보호											
녹 지	산림이용	지방녹지 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illegible]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 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 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 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 운영	토 목 영	토 목 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축 영	건축운영 배관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통신 영	통신 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 영	전화상담 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기 영	전기 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계 영	기계운영 영사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열관리 영	열관리 영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공 영	화공 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스 영	가스 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영	기후환경 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박항해 영	선박항해 영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박기관 영	선박기관 영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림 영	영림운영 원예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사육 영	사육 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건 영	보건 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위드 영	위드운영										
	사무 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

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 다. (생략)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 ----- ----- -----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 ----- ----- ----- ----- ----- ----- -----

1.·2. (생략)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생략) ② ~ ⑦ (생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	1.·2. (현행과 같음) 3. ----- ----- ----- ----- 제19조에 따른 6개월 이상----- ----- ----- ----- ----- 1개월 -----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시간선 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
---	--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 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전출 또는 전보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

-----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

⑦ ----- 따
라 -----

-----.

⑧ -----

----- 다른 -----

-----.

⑨ -----

른 기관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⑩·⑪ (생략)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략)

<신설>

----- 전보-----
-----.

⑩·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5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진출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

제30조(5급·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진출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다.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략)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u>근신·영창</u>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② ----- ----- ----- ----- ----- ----- <u>근신·군기교육</u> ----- ----- -----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u>휴직하는 경우</u>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 ----- ----- ----- ----- ----- <u>휴</u> ----- ----- <u>직하거나 직위해제를 받는</u> ----- ----- -----.
④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

력) ① (생략)	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u>제27조제4항제3호</u> 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② ----- ----- ----- ----- ----- ----- <u>제27조제4항제1호</u> ----- ----- ----- ----- ----- -----.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② (생략)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보호대상자</u> 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③ ----- ----- ----- ----- ----- ----- ----- ----- <u>지원대상자</u> ----- -----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 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 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 여 실시할 수 있다.	----- ----- ----- ----- -----.
④·⑤ (생 략)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자 결정 등) ① ~ ⑥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 자 결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 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u>포기</u> <u>하는</u>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 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 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 ----- <u>포기</u> <u>하거나 임용 후 퇴직하는</u> ---- ----- ----- ----- ----- -----.
⑧ ~ ⑩ (생 략)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 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② ----- ----- -----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u><단서 신설></u>	----- ----- <u>다만, 시험실시기관의</u> <u>장이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u> <u>충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u> <u>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u> <u>여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7